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9.18 대통령령 제2101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의 정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말한다.

제3조(공공연구기관)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공공연구기관으로 정한 기관"이란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연간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등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出資)받거나 출연받은 법인 또는 단체

제4조(관계중앙행정기관)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및 방위사업청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08.9.18>

제4조의2(특허신탁관리업) 법 제2조제8호에서 "특허권 또는 실시권의 이전,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납부 업무
2. 특허권에 대한 보호 관리 업무
3. 특허권 또는 실시권의 이전에 관한 업무
4. 특허권 또는 실시권의 이전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분배 업무
5. 특허권의 상품화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08.9.18]

제5조(촉진계획 및 실적의 제출) ①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기관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에 관한 연간추진계획 및 중기추진계획을 해당 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소관 분야별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의 2월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6조(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술의 민간부문 이전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확보·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의 운영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사료 및 의견의 세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심의회에 부칠 심의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지식경제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08.2.29>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가.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자
 - 다.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술개발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라.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제9조(기술이전·사업화정보의 등록 등)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술의 등록으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해당 연구개발자의 부재(불재)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해당 기술의 보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술의 명칭과 내용(기술의 이용분야를 포함한다)
4. 이용조건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 제공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범위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1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의 제출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경우
- ③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장 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도입자와 기술제공자에 관한 자료
 2. 기술이전방법, 계약 금액 등 기술이전 계약에 관한 자료
 3.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
 4. 전담인력, 보유기술, 지원제도 등에 관한 자료

제11조(거래소의 사업) 법 제9조제3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12조(거래소에 대한 지원 기관) 법 제9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을입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윤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윤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연구회

제13조(거래소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 거래소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소요 경비의 일부를 출연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와 출연 금액 또는 지원 금액의 규모,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거래소의 수익사업) 거래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5조(거래소에의 위탁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사업을 거래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방법 및 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
2. 출자금·융자금 또는 출연금의 금액 및 그 납입 또는 자급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와 활용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자금·융자금 또는 출연금을 납입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납입 또는 지급하거나 한꺼번에 납입 또는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개정 2008.2.29>

1.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이하 "기술거래사"라 한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거래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3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2.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업무지침서를 보유할 것
3.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6개월이 지날 것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거래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하였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기술거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 전문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3.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17조(기술거래기관 지정 취소의 통보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술거래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한 정부기관, 지원금의 규모 및 용도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은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상반기 실적은 7월 31일까지, 연간 실적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술거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품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설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같은 법 제3조의 구분에 따른 국·공립학교로서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한 학교
 5. 그 밖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 연구개발인력 및 예산, 보유기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 ②공공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동으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전담조직에는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④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은 매년 기술이전·사업화 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2. 특허 등의 출원·등록·이전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
 3. 기술이전 및 활용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4. 기술이전·사업화촉진
 5. 산업계의 연구성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제19조(전담조직의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추진 비용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13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연수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래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재단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21조(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08.2.29>

1.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기술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술개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4.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기술 관련 정책·기획·평가 또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5. 기술거래기관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연구원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또는 평가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6. 해외 또는 민간분야에서의 기술거래 관련 경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지식 경제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것

제22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관리) ①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8.9.18>

1. 거래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재단
 4.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업무 등을 위하여 이 영

에 뛰어나거나 아니하는 경우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운영체계, 사업신청절차 및 선정절차, 지원의 범위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기술보육사업의 지원 등) ①법 제18조에 따른 기술보육사업의 대상은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창업 후 1년 이내인 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육사업의 대상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시제품(試製品)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정보·설비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을 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기술의 내용
 2. 자금·인력·정보·설비 및 기술 등 지원내용과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3. 기술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 ④제3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
 2. 기술보육사업의 기획·평가·관리·기반확충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

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배분) ①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기술개발 결과의 이전계약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자(연구자는 제외한다)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그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액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50 이상 및 100분의 5 이상의 금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한다. 다만, 연구자가 공무원(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 제정)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29>

1. 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인력 배정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자 또는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기술료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①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 지적재산권 및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국가등이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를 공공연구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 공공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제9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거래소에 등록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을 위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공시하는 등 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공공연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협약에 의하여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③국가등은 공공연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공공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기술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專用)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공공연구기관은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하여는 연구개발 종료 후 1년의 범위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법 제24조제6항 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기술이전 · 사업화와 관련하여 외부기관과 협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느는 비용

2.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제27조(기술유동화 촉진사업 실시) ①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개정 2008.2.29>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2.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 「정보통신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기금의 설치목적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그 기금을 관리 ·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②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填)하는 대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유동화 촉진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유동화 촉진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기관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관을 말한다.

③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기술평가비용 등 기술유동화 촉진사업에 따르는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제28조(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의 지급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대상과 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재정지원금 등의 지급 등)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은 기술이전 ·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에 따르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기술이전 · 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여 받거나 사용 · 수익하려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그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산의 관리청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부 · 양여, 사용 · 수익의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제31조(지적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지적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기 · 설비 및 시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기술평가기관 지정기준 등)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담당조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개정 2008.2.29>

1. 다음 각 목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평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3명 이상의 전문가

 나. 기술평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7명 이상의 전문가

2.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모델을 보유할 것

3.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 · 관리 · 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②기술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에 관한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제33조(기술평가기관 지정취소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수"란 30건을 말한다.

②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술평가 정보의 통보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를 매년 상반기 실적은 7월 31일까지, 연간 실적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는 기술거래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제17조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

줄거리기관은 "기술평가기관"으로, "제16조제1항제1호"는 "제32조제1항제1호"로 본다.

제34조(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 신탁인수에 관한 약관
3. 기술이전 유형별 약관
4. 신청 법인·기관 또는 단체(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5. 정관 또는 규약
6. 운용전문인력의 이력 및 조직구성
7. 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관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
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④ 지식경제부장관이 특허신탁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허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18] [총전 제34조는 제42조로 이동 <2008.9.18>]

제35조(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특허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가 제34조제1항제1호의 특허신탁관리업 업무규정 또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약관을 변경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허신탁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인·기관 또는 단체명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③ 특허신탁관리기관은 특허신탁관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 및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18] [총전 제35조는 제43조로 이동 <2008.9.18>]

제36조(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① 특허신탁관리기관이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을 한 경우에는 승인내용을 지식경제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18]

제37조(특허권의 목록)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목록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의 명칭
2. 특허등록번호
3. 출원 또는 등록연월일

[본조신설 2008.9.18]

제38조(이전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3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권의 목록
2. 해당 특허권의 위탁자와의 신탁계약기간
3. 기술료 등 이전조건 및 약관

[본조신설 2008.9.18]

제39조(업무의 정지처분 절차)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대상자가 그 업무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법 제35조의6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9.18]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9.18]

제4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과 부과 금액 등을 서면에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18]

제42조(의견 청취)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일 10일 전에 해당 처분의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사유·일시 및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분의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에게 확인하도록 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처분의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서의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서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08.9.18>]

제43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거래소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등록 업무
3.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보육사업에 관한 업무
4.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 업무

[제35조에서 이동 <2008.9.18>]

부칙 <제20137호, 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이전을 위한 계약의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투자기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술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공기관직무밀접의처분·관리및부설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③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전문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한다.

④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발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호제1항에 따른"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⑥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5항제3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⑦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⑨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하목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한다.

⑪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⑫통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라"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이전촉진법」이나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21조제6호, 제2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2호, 제25조제5호, 제27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2호·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

수정판 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 차관보"를 "지식경제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1010호, 2008.9.18>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제1항 관련)